

第16條는 手數料 감면대상자에 대해 쓰레기 基本 배출량을 基準으로 봉투를 무상 제공하게 해 냈습니다.

第17條입니다.

廢棄物 收去方式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가도록 하고 봉투판매 수입을 쓰레기 收去 人力 裝備等 改善 확충에 投資하도록 해 냈습니다.

第18條에는 自體 收去 收集·運搬 處理者 지정대상을 店鋪, 商街, 市場 等과 同一 建物 內의 事務室, 점포로 하도록 해 냈습니다.

案 19條입니다.

豫算 범위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해 냈습니다.

關聯 法令은 廢棄物管理法 第13條 내지 第19條 및 63條와 관련되고 廢棄物管理法施行令 第42條가 되겠습니다.

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

(參 照)

釜山直轄市沙下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 관한 條例改正條例案

(끝에 실음)

○委員長 金信祐 清掃課長 수고했습니다.

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.

○專門委員 沈玩澤 釜山直轄市沙下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1. 제안이유

쓰레기수거 종량제가 우리구에서도 '95. 1.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 종량제에 사용될 규격봉투 제작, 공급 및 판매 수수료의 정수방법 등 이에 필요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함.(안 제2조)
- 나. 폐기물분리 보관 방법에 있어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토록 간소화 함.(안 제4조)
- 다. 구청장이 지정한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 함.(안 제6조)
- 쓰레기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,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라. 부적정 배출 폐기물에 대해 수거 지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, 운반업체의 봉투 미사용 폐기물 수집 운반시 영업정지, 허가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- 마. 쓰레기 봉투의 용도, 색상을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도록 함.(안 제9조)
- 바. 쓰레기 봉투 제작시 구의 휘장, 용량,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함.(안 제10조)
- 사. 봉투 공급과 판매 체계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.(안 제11조)
- 아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대행 계약서 명시항목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12조)
- 자.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수수료의 부과, 징수방법을 개선함.(안 제13조)
- 차. 봉투 구입시 수수료 부과, 징수가 이루어지게 하고,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부과토록 함.
- 카. 봉투 공급대금은 선납토록 함.(안 제14조)
- 타.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해 쓰레기 기본 배출량을 기준으로 봉투를 무상 제공하게 함.(제16조)
- 파. 예산 범위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.(안 제19조)

3. 검토의견

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의 분리 보관 방법에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토록 하였으며 배출자에 대한 감량화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에서 제작한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할 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있어 일반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이행사항을 숙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바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以上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金信祐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.

다음은 質疑 順序입니다.

釜山直轄市沙下區廢棄物管理및手数料等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를 申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○申俊植委員 委員長!

○委員長 金信祐 申俊植委員 質疑해 주십시오.

○申俊植委員 內容은 아직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12條 廢棄物 수집·운반 처리 代行에 대해서 좀 具體的으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清掃課長 金芳玉 12條 廢棄物 收集·運搬 處理代行 事項입니다.

1項 區廳長은 法 第13條 收集, 法 第13條는 廢棄物 管理法을 이야기합니다.

13條 2項이라는 內容은 收集·運搬·處理의 代行事業입니다.

“이 規定에 의한 廢棄物의 收集·運搬·處理를 收集·運搬은 廢棄物 收集·運搬業者에게,

處理는 廢棄物 中間 處理業者에게 또는 최종 處理業者에게 代行하도록 할 수 있다.”

본래 區廳長의 할 일입니다마는 代行者에게 代行할 수 있도록 해 놔습니다.

다음 2項입니다.

“區廳長은 1項의 規定에 따라 代行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명시한 代行 契約書를 작성해야 된다.”

內容은 1號에서 7號까지 있습니다.

1號 代行 區域 收集·運搬·處理豫想 物量, 契約 金額 및 期間 그리고 收集·運搬 또는 處理方法 車輛 進入 不可地域에 대한 運搬方法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.

이 問題에 있어서는 지금 車輛進入이 不可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?

지금 가장 爭點이 되는 事項입니다.

이대로 우리 住民이나 區에서 원하는 事項 같으면 代行하는 사람이 골목에 들어서 너희가 실어내야 되지 않느냐로 解釋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現在 저희들이 收去方法이 打鐘 收去方法입니다.

그래서 釜山市에 住民이 가장 便利하게 버릴 수 있는, 車가 進入할 수 있는 데까지 最善을 다해 들어가 주고 또 住民이 充分히 알고 나올 수 있게끔 車를 待機해 주고 그리고 鐘을 치는 音樂을 하든 잘 알려주고 그런 方法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.

3項 수집운반 또는 處理에 必要한 施設, 裝備의 規格 및 手量 이것은 處理業 許可條件에도 나와 있는 事項입니다.

차고지 및 事務所 등의 소재지,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, 계약 해지에 관한 事項도 本 條例案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收去業務에 그야말로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경우입니다.

그래서 쓰레기 收去事業에 큰 支障을 招來해서 契約目的에 違背됐다고 判斷될 때 이렇게 理解를